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 용도 특례 신설(안 제74조 부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포함)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 특례 신설(안 제75조의2)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의무예치금 사용 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를 제75조의3으로 하고,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에 관한 특례) 제7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2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0년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75조의2 (생략)	<u>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에 관한 특례) 제7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u> <u>제75조의3 (현행 제75조의2와 같음)</u>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4124